

꼭! 알아 두어야 할 중소기업 지원제도

중소기업이 알아야 할 중요 지원제도를 매월 게재하여
경영지원에 도움을 드리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활용
바랍니다.



정책자금 지원

◎ 사업전환 자금

중소기업이 새로운 유망 사업 또는 품목의 추가 등의 구조조정을 통한 경쟁력 확보에 필요한 생산시설 투자, 운영자금 등을 지원합니다.

※ 지원규모 : 1,475억원

※ '10년 지원현황 : 신청기업 388개사 중 268개사 선정지원, 업체당 평균 5.5억원

※ 지원대상

- 아래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로서 사업전환계획 승인을 얻은 중소기업

- 신청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며,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중소기업으로 다음 업종 조건을 만족하는 기업

※ 「서비스업」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“농업 및 임업, 어업, 광업, 제조업, 전기·가스·증기 및 수도사업, 건설업”을 제외한 업종(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)

- 현재 영위하고 있는 업종 또는 품목이 전체 매출액의 35% 이상



을 차지하는 주력사업이고, 향후 축소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사업전환의 대상이어야 함

- 「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무역 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받은 기업

※ 무역조정지원기업의 경우, <1. 공통사항> 마. 융자제한기업 ⑥항 적용에서 예외

❖ 융자범위

- 시설자금

-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도입, 공정설치 등에 소요되는 자금
- 정보화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금
- 사업장 건축자금(토지구입비 제외), 임차보증금
- 사업장 확보자금(매입, 경·공매) 단, 기업당 1회에 한정

- 운전자금 : 제품생산 비용, 기타 사업전환과 관련한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경비

- 단, 20억원 이상 시설추자기업의 운전자금은 7억원

❖ 융자조건

- 대출금리 : 공자기금 대출금리에서 0.6%p 차감(금리기준)

- 대출기간 : 시설은 5년 거치 5년 상환,
운전은 2년 거치 3년 상환

- 대출한도 : 기업당 연간 30억원(운전자
금은 5억원)

- 단, 20억원 이상 시설추자기업의 운전자금
은 7억원

❖ 융자방식

- 중진공 직접대출 또는 금융회사를 통한
대리대출(업체가 선택)





기술개발 지원

◎ 민·관 공동투자 기술개발 사업

정부와 수요처(대기업, 공기업)가 사전에 기술개발 자금을 조성한 후 역량을 갖춘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며 수요처는 개발제품을 구매해 줍니다.

※ 지원규모

- 50개 과제 내외(신규과제 200억원)

※ 지원대상

-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고 협력펀드 조성에 참여한 수요처에서 발급한 추천서를 제출한 기업

※ 우선선정

- 단순 성능개선 이외의 신기술 및 국산화 개발 등을 통해 현저한 기술적 혁신 또는 수요기관과의 동반성장이 예상되는 과제
- 수요처의 예상 구매액이 높은 과제
- 녹색기술, 신성장동력, 신제조기반 기술



※ 지원내용

- 지원한도 : 총개발비의 75% 이내, 최대 3년간 10억원까지 지원
- 지원분야 : 중소기업 공동지원협약 및 협력펀드 조성에 참여한 수요처에서 개발을 제안하여 채택한 과제

※ 신청·접수 : '11년 지정과제 공고 시점부터 자금 소진시까지

- 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(<http://www.smtech.go.kr>)을 통한 온라인 신청
- ※ 사업계획서 신청 : <http://www.smtech.go.kr> 또는 <http://sanhak.smba.go.kr> 회원가입 로그인
과제관리 과제신청 사업계획서 내용입력

판로 지원

◎ 성능인증제도

중소기업청에서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의 성능을 인증하여 공공기관이 기술개발제품 구매를 지원합니다.(성능인증 취득과 동시에 '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'의 대상으로 편입)

❖ 지원규모

- 성능인증 발급 실적 : (08) 1,900건, (09) 839건

❖ 지원대상

- 『중소기업 기본법』에 따른 중소기업

❖ 제도내용

-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의 지원내용과 동일



❖ 인증 대상 품목

- 신기술인증제품, 특허제품, 기술혁신개발제품, 벤처기업·기술혁신형기업 제품 등 17종
- 대상품목 상세내용은 「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 세칙」(www.smba.go.kr → 정보마당 → 법률정보 → 현행고시에서 검색)
- 유효기간 : 인증일로부터 3년

❖ 문의처

- 중소기업 홈페이지(www.smba.go.kr) 중기 지원시책 코너 참조
- 전화상담 국번없이 1357, 비즈인포(www.bizinfo.go.kr)